

##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### □ 민원 제목 : 약국지위 승계 요구

### □ 신청 취지

#### ○ 약국의 지위승계(양도)허가 요구

- 약국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위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행정청의 의견은 부당하므로 약국의 지위승계 처리를 요구함

### 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#### ○ 2019년 약국개설 허가시에도 이미 위반건축물이 상태였음

- 당시 민원인도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 약국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보건소 측에 허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음
- 위반건축물의 위치가 약국과 상관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개설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

#### ○ 약국지위승계 거부는 신의성실 위반 사항에 해당함

-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해당 약국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약국을 양도하지 못해 입을 재산상의 손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
- 약국 영업이후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약국의 영업 및 개설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준 후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한 해당 사항은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약국의 지위승계 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함

## □ 사실관계

-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위승계 신고의 대상이 되는 약국이 개설된 건축물은 위반건축물이라 표기되어 있고 이하 그 구체적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
- 그 중 변동사항 란에는 변동일 및 구체적 위반사항과 시정완료 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, 2019. 2. 12.이 최근 변동사항이 기재된 변동일로 확인됨
-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은 2019. 12. 2. 개설등록 되었으며 당시 건축물 대장에는 상기와 같이 위반건축물이라 표기되고 구체적 위반사항이 기재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

## □ 관계 법령 등

- 지위승계에 관한 처리불가 의견은 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에 입법목적이 있는 건축법 79조 등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임

## □ 판단 및 결론

- 지위승계를 수리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  -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라는 건축법 관련 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법 위반사항의 시정이 선결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나,
  - 현재 운영중인 약국이 개설등록된 2019. 12.경 당시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구체적 위반사항이 기재된 상태에서 개설등록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변동사항이 없는 점,
  - 당시 담당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개설등록 처리하여 이후 지위승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민원인이 당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,

- 위와 같은 제반 사정 즉,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, 건축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서, 민원인의 약국 개설등록 당시의 개별적,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
- 지위승계 신고인에게 차후에는 건축물의 위반상태가 해소되어야 지위승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여 그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받고 지위승계를 수리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##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□ 민원 제목 : 공동명의 자동차 등록말소 요구 민원

□ 신청 취지

○ 공동명의 자동차 등록말소 요구 민원

- 공동명의자인 시어머니가 사망하였지만 상속인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해당차량 등록말소가 어렵게 되어 처리해줄 것을 요구함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민원인은 2005년경 승용차를 구매하여 장애등급을 받은 시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운행해왔는데 차량이 노후화되어 폐차하고 등록말소 하려 하는데,
- 시어머니가 오래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민원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3명의 상속인들과 연락 두절되어 행정청에서 해당 차량 등록말소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등록말소를 해 줄 것을 요청함

□ 사실관계

- 민원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해당 차량은 민원인이 공동소유 대표자로서 사망한 시어머니인 박○○ 공동명의로 기재되어 있음
-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차량 관련 차량정기검사 및 책임보험가입 등 행정법규 위반 이력이 없고, 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관계 설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

- 민원인의 제적등본,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민원인은 시어머니가 사망하기까지 수년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여 왔었고 시어머니의 상속인으로 민원인의 배우자와 그 형제자매 3명이 있음
- 해당 차량의 차령은 17년에 달하고 있고 자동차세 부과 기준 시가 표준액으로 보더라도 840,000원에 불과하며 민원인은 차량을 폐차하기 위하여 폐차장에 입고함
- 민원인과 시어머니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등록말소를 바라는 민원인과 사망한 시어머니의 상속인 중 1명인 그 배우자의 지분 합계는 62.5%에 달함
- 장애인 복지 혜택 관련 부서 조사·확인에 의하면 민원인은 시어머니가 사망하여 장애인용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며, 그동안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음

## □ 판단 및 결론

- 민원인 신청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말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 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에 의하면 민원인이 자동차세 납부자이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실제상으로는 해당 차량이 민원인의 소유로 보이는 점,
  - 자동차등록 원부 상 해당 차량 취득 후 17년간 망 박○○의 소유 지분에 대한 분쟁이 없었고, 정기점검과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과태료 등의 체납 없이 차량을 유지·관리해 온 점,
  -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자동차등록령은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승용자동차는 차령 1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본 건 차량은 차령이 17년에 달하는 점,
  -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인 차령, 지분율, 잔존가치, 압류·저당 부존재, 납세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고려하고,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라는 자동차관리법 목적에 비추어 민원인 신청에 따라 등록 말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